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82

발의연월일: 2024 7. 26.

발 의 자:한지아·백종헌·이인선

안상훈 • 정성국 • 최보윤

김석기 · 안철수 · 김예지

윤재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

제28호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 법률 제20218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 제한 등) ①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 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 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 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 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

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7. (생 략) <u><신 설></u>

② ~ ⑦ (생 략)

	•

1. ~ 27. (현행과 같음)
28.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
기관

② ~ ⑦ (현행과 같음)